|  |  |  |
| --- | --- | --- |
|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종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관련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유관 사항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2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에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징수 시범업무 세수정책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3]37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에 의거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징수(이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시범업무 납세자는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처리해야 한다.  2. 본 공고 제3조에서 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 이전(이하 “시범업무 시행 이전”으로 약칭)에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인 시범업무 납세자는 국세 주관세무기관(이하 “주관 세무기관”으로 약칭)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범업무 납세자의 시범업무 시행 이전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의거하여 환산한다: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 =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서비스 영업액의 합계 / (1+3%)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하는 시범업무 납세자의 과세서비스 영업액은 미공제 전의 영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시범업무 시행 이전에 이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과세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범업무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여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주관세무기관이 <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 및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4. 시범업무 시행 이전의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시범업무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시범업무 시행 이전에, 시범업무 납세자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범업무 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등록과 유사한 개념)한다.  6. 시범업무 시행 이후, 시범업무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와 그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처리해야 한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할 때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범업무 납세자는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을 미공제 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시범업무 납세자가 재화 판매 및 가공수리 수선용역 제공과 과세서비스를 겸업하는 경우, 과세화물과 용역매출액과 과세서비스 매출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또한 구분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8. 시범업무 납세자가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증치세 탈세, 수출퇴세 편취 및 증치세 공제증빙 허위 발급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6개월의 납세 지도기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9.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베이징 등 8개 성, 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징수 시범업무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증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3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  　　국가세무총국  　2013년 5월 31일 |  | **关于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  **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  **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28号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全国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3〕37号）、《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2号），现就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简称营改增）试点纳税人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公告如下：  　　一、纳入营改增试点范围的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试点纳税人，应按照本公告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  　　二、除本公告第三条规定的情形外，营改增试点实施前（以下简称试点实施前）应税服务年销售额满500万元的试点纳税人，应向国税主管税务机关（以下简称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手续。  　　试点纳税人试点实施前的应税服务年销售额按以下公式换算：应税服务年销售额＝连续不超过12个月应税服务营业额合计÷（1+3％）  　　按照现行营业税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试点纳税人，其应税服务营业额按未扣除之前的营业额计算。  　　三、试点实施前已取得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并兼有应税服务的试点纳税人，不需要重新申请认定，由主管税务机关制作、送达《税务事项通知书》，告知纳税人。  　　四、试点实施前应税服务年销售额不满500万元的试点纳税人,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  　　五、试点实施前，试点纳税人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具体办法由试点地区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根据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和本公告制定，并报国家税务总局备案。  　　六、试点实施后，试点纳税人应按照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及其相关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按营改增有关规定，在确定销售额时可以差额扣除的试点纳税人，其应税服务年销售额按未扣除之前的销售额计算。  　　七、试点纳税人兼有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及应税服务的，应税货物及劳务销售额与应税服务销售额分别计算，分别适用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标准。  　　八、试点纳税人取得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后，发生增值税偷税、骗取出口退税和虚开增值税扣税凭证等行为的，主管税务机关可以对其实行不少于6个月的纳税辅导期管理。  九、本公告自2013年8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北京等8省市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38号）同时废止。  特此公告。    　　国家税务总局  　　2013年5月31日 |